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

284

제출연월일 : 2016. 11. 21(월)

제 출 자 : 함명섭 대표의원

찬 성 자 : 박찬원, 박종욱,

장문혁, 이범연,

임영순 의원

1. 주 문

가.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및 「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6년 12월 7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『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』을 심사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평창군의회위원회조례」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6인으로 구성하다.

3. 참고사항: 없음

심 사 계 획

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

-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3. 활동기간

○ 2016년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○ 박찬원 의원, 함명섭 의원, 박종욱 의원, 장문혁 의원, 이범연 의원, 임영순 의원

5. 운영계획

일 시	차 수	부 의 안 건	비고
2016. 12. 7 (宁)	이이쉬	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	